

企業年金會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李 喜 均

경 영 학 과

(1987. 9. 30 접수)

<要 約>

선진국에서는 劍勞者의 退職金支給保障制度로서 企業年金制度가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退職金制度가 年金制度로 전환되는 추세도 증가하고 있다. 年金制度를 채용한 기업에서는 退職劍勞者에게 未來에 지급할 給付金이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給付金支給에 충당할 基金積立額을 조달하기 위한 年金原價의 測定과 年金關聯情報의 公示가 중요한 會計問題로 제기된다. 그리고 企業年金會計는 年金制度의 관련법규와 기업의 年金財政 그리고 年金原價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保險數理假定 등의 영향으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企業年金制度를 중심으로 발전한 年金會計基準의 变遷과정, 年金原價의 認識과 測定, 年金資產과 負債의 測定 그리고 公示에 관한 主要會計方法을 理論的, 體系的으로 分析하여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現行年金制度에 적합한 年金會計基準을 재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Study on the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Lee, Hee-kyun

Dept. of Management

(Received September 30, 1987)

<Abstract>

The guarantee system for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has pervasively been changed from retirement benefit system to employee pension plans in developed countries.

As the benefi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irm's financial posi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the measurement of pension cost and the disclosure of pension-related information become important issues. These issues are more complicated by the following problems, the legislation of the plan, firm's pension finance, and actuarial assumptions on pension cost.

In this paper, we review theoretically and systematically the history of accounting standard for pensions,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pension cost, the measurement of pension assets and

* 본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liabilities, and the important accounting methods of disclosure in America. On the basis of the review, we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standard for pension in Korea.

I. 序　論

企業에 의한 退職勤勞者의 所得保障策으로는 退職一時金制度와 年金制度가 있다. 企業年金은 기업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退職年金制度라 부르기도 한다. 歐美諸國에서는 19세기 말부터 社會保障制度의 일환으로 年金制度가 국민생활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국민들에게豫期치 않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社會的 危險 즉, 老齡, 退職, 死亡, 不具 및 疾病등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개인의 經濟生活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가가 老人, 退職者, 障碍者, 그리고 死亡者의 유족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福祉年金制度를 실시하여 왔으며 그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公的年金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私的年金制度는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企業年金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퇴직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公的年金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勞使合意에 의해서 年金制度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도任意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公的年金과 차이가 있다.¹⁾ 企業年金制度는 企業이 주체가 되는 제도이지만 개별기업 또는 업종이 동일한 다수기업에 의해任意設立되며 醸出金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하는데 사업주 全額負擔 또는 勞使共同負擔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기업이 성장하면서 公的年金외에 企業年金도 급속히 증가해 왔는데 이는 公的年金이 기본적인 生計保障에만 그 機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老後生活保障이 미흡하며 또한 동일한制度를 각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職種 및 企業間에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公的年金의 擴充으로 인하여 年金財政에 의한 급여수준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企業年金이 크게 보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公的年金의 機能限界와 財政危機를 맞이하면서 그 補完機能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래任意制度로 운영되어 오던 企業年金을 準法定制度로法制化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²⁾

또한 企業은 設立年數가 길어지면서 누적퇴직금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中高齡化現象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액이 증가하며 퇴직근로자의 生計保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企業年金이 증가해 오고 있다. 年金制度를 채용한 기업에서는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급부금이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 紿付金支給에 충당할 基金積立額을 조달하기 위한 年金原價의 測定과 年金關聯情報의公示가 중요한 회계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企業年金會計는 年金制度를 둘러싸고 있는 法律制度, 企業의 年金財政, 그리고 年金原價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保險數理假定 등의 영향으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企業年金制度를 중심으로 발전한 年金會計基準의 变천과정, 年金原價의 認識과 測定, 年金資產과 負債의 測定 그리고公示에 관한 주요회계 방법을 理論的, 體系的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現

1) 閔載成, 年金制度와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方向, 한국개발연구원, 1980, 가을호, p. 114.

2) 申守植, 退職金制度의 2大課題와 團體生命保險, 保險公社調查月報, 1981. 2, p. 9.

行年金制度와 관련된 企業年金會計基準을 제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企業年金制度의 概要

I. 企業年金制度의 發展過程

1889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勞動者階層을 대상으로 한 強制適用의 社會保障制度가 독일에서 최초로 생겨나기 이전인 1875년에 The American Express Company가 미국 최초의 企業年金制度를 설립하였으며 그 뒤 1880년에는 The Baltimore and Ohio Railroad Company가 두번째로 설립하였고 그 후 미국에서는 50년동안에 약 400개의 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 초기의 연금제도는 대개 철도, 금융 및 공익사업분야에서 설립되었으며 제조기업에서는 다소 늦게 발달되었다. 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조기업의 대부분이 비교적 年輪이 짧았으므로 公益事業에 비해 退職金問題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企業年金制度는 1940년대 이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연금제도의 설립이 경영자의 特權이라는 성격이 강하여 人事管理를 위한 特別給與(fringe benefit)의 성격을 지닌 非公式年金이 대부분이었다.³⁾

초기의 年金制度는 公的年金이 노동자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企業年金은 사무직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勞動者階層은 소득격차가 커기 때문에 社會保險으로서의 年金制度는 소득이 낮고 본인 스스로 老後準備를 할 수 없는 이들 계층을 위한 社會政策이었다. 事務職階層이 社會保障의 年金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은 어느 정도 본인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층을 대상으로 한 年金制度에서는 낮은 수준의 一律定額이었으며 所得比例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對象報酬의 上限을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1.5배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정하였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사무직에게 적용할 경우 年金給與計算에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극히 일부분이며 수취하는 연금도 從前所得에 비해 작을 수 밖에 없었다.⁴⁾ 그래서 企業年金은 사무직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무직의 급여중 公的年金의 對象報酬의 上限을 초과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제정된 것이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기간 企業年金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이것이 勞動者階層에도 확대 적용된 것은 第2次大戰後의 일이다.

특히 미국의 社會保障制度가 法律上 체계화되고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1935년의 社會保障法(Social Security Act of 1935)의 제정 이후의 일로서, 1930년대에 발생한 미국의 大恐慌으로 실업문제와 함께 老齡退職者の 生計保障問題가 정책과제로 등장하였으며 많은 기업이 파산하게 되어 각 기업의 退職金制度도 한 때 停滯狀態에 빠져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社會保障委員會를 설치하여 老齡退職者와 失業者救濟策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형태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給與內容과 給與水準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는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기업근로자의 年金所得은 公的인 社會保障

3) Everett T. Allen, Jr., Joseph J. Melone and Jerry S. Rosenbloom, *Pension Planning*, Richard D. Irwin, Inc., 1984, pp. 1~2.

4) 村上清, 新企業年金入門, 社會保險廣報社, 1984, p. 51

制度의 財政收支의 惡化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年金受給者の 급여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企業年金制度가 公的年金制度를相互補完하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⁵⁾ 한편 第2次世界大戰後에 미국이나 유럽은 노동조합이 企業年金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勞使交渉에 의하여 기업연금을 급속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에는 미국, 영국이 전봉급생활자의 약 50%, 유럽에서도 서독이 70%, 프랑스가 80%, 스웨덴이 90%를 적용받고 있다.⁶⁾

1960년대 이후 구미제국의 年金制度의 특징은 企業年金制度의 발전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운용 면에서 稅制上 지원과 支給保障에 대한 公的規制 경향이 강해졌다. 그동안 각국에서는 公的年金도 확충하였지만 年金財政에 의한 급여수준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企業年金이 크게 보급되어 왔다. 이는 公的年金이 기본적 보장에만 그 機能이 한정되어 企業年金의 補完에 의해서 비로소 老後對策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公的年金의 機能限界와 財政危機를 맞이함에 따라 그 補完機能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 任意制度로 운용되어 오던 企業年金을 準法定制度화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從業員退職所得保障法(ERISA 1987), 서독의 企業退職金改善法(1974)이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기업도산으로 인한 賃金, 退職金 등의 支給保障法을 제정함으로써 企業年金은 점차 法定制度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日本의 경우에도 1976년 「賃金支拂의 確保」 등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면서 점차 企業年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⁷⁾

이와같이 최근의 각국은 국가가 法律로 규제를 통하여 근로자의 受給權을 강화시키고, 轉職者에게도 근속년수에 따라 年金權利를 부여하고 기업도산시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保証保險을 적용하는 경향이 보이고 公的年金은 그 限界와 財政難 때문에 오히려 감축하려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第2의 所得保障機能으로서 企業年金의 擴充强化는 각국 공통의 정책으로 되고 있다.⁸⁾

2. 企業年金制度의 性格과 機能

年金制度는 그 性格과 機能上 公的年金制度(public pension plans)와 私的年金制度(private pension plans)으로 구분되며 이중 公的年金制度는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社會保障制度로서 社會保險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私的年金制度는 기업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企業年金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퇴직후에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公的年金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서 公的年金외에 企業年金이 급속히 보급되어 있는 이유는 退職金制度의 問題點을 개선하는 한편 公的年金의 補完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수한 勞動力を 보유할 수 있고 또한 高齡勤勞者를 원활하게 퇴직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① 企業年金은 시설이 아니라 제도이므로 賃金의 장기적 固定化를 회피시킬 수 있다. ② 退職一時金의 一時・大量負擔을 피할 수 있어 計劃的 均等支出이 가능하다. ③ 다른 福利施設과는 달라서 全員이 이용할 수 있다. ④ 功勞報償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⑤ 稅金面에서 유

5) 閔載成, 朴宰用,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84, 8, pp. 100~111.

6) 村上清, 新企業年金入門, p. 52.

7) 申守植, 退職金制度의 2大課題와 團體生命保險, p. 9.

8) 村上清, 年金の知識,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5, pp. 110~111.

리하고 優待措置가 있다. ⑥ 퇴직후의 生活保障對策이 退職一時金보다 강하다. ⑦ 근로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⑧ 定年延長으로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⑨ 年功序列給이 폐지되고 能力給導入이 가능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① 「인플레이션」 위험 ② 生活水準의 상승위험 ③ 利子率 하락위험 ④ 長期契約에 따른 위험 즉, 企業倒產危險같은 불리한 점도 있지만 퇴직금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또한 退職金倒產을 피할 수도 있다.⁹⁾

1970년대에 들어와서 각국은 企業年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法定制度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첫째, 老後의 生活保障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부에 의한 公的年金에만 의존 또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生計費水準 이상의 것까지保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醫學技術의 발달과 平均壽命의 연장에 의한 人口의 高齡化, 核家族化로 인한 扶養觀念의 회복, 生活構造와 經濟事情이 변화함에 따라 勤勞所得階層의 지출증대와 그로 인한 老齡者扶養의 곤란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社會的, 經濟的 與件變化에 따라 老後生活이 일층 곤란할 것에 대비하여 企業年金制度와 같은 추가적인 補完制度가 필요하다.

둘째, 經濟社會의 变동과 所得保障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貯蓄余力を 급격한 「인플레이션」 아래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賃金勤勞者の 비율이 經濟發展과 더불어 증가되는 추세에서 이들에게 일상생활을 위한支出 이외에 貯蓄을 자발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또한 國民所得水準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生活水準의 향상으로 消費性向이 증대하고 生活內容이 다양해지므로 貯蓄의余力を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세째, 社會保障制度에 의한 老後生活의 保障機能인 公的年金의 존재가 빙약하고 그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勤勞者の 老後生活保障에 대한 기업의 社會的 責任의 수행과 근로자의 요구,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하여 企業年金이 요망되고 있다.

네째, 公的年金制度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① 年金積立額을 갖고 있지 않은 老齡者에게 年金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재의 근로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② 公的年金은 동일한 제도를 각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職種 및 企業間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③ 經營實績이 양호하고 勞使協力이 잘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自律의in企業年金에 비하여 公的年金의 給與水準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公的年金의 機能限界 때문에 企業年金을 法制化하여 公的年金의 補完機能을 담당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두 제도를 각각 獨立된 제도로 양립시키면서 勤勞者の 老後生活對策을 보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두制度間의 統合이나 무리한 連繫方式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事業主側의 부담의 二重性을 일부 면제하기 위하여 양제도의 부분적인 調整은 시도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日本의 調整年金(厚生年金基金制度)과 英國의 適用除外制度(Contract-out) 등이다.

3. 企業年金制度의 分類

企業年金制度는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基準에서 분류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美國과 日本의

9) 庭田範秋, 現代生命保險の課題, 東洋經濟新報社, 昭和56年, pp. 58~59.

10) 申守植, 國民福祉年金論, 生命保險協會, 1979, pp. 98~99.

年金制度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企業年金制度의 分類와 概要

미국의企業年金制度¹¹⁾는事業主 단독으로 설립 또는 사업 주와 종업원간의 협상에 의해年金制度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勞動組合과 多數企業間의 協商에 의해 Pattern Plan¹²⁾을 설립할 수도 있다. 모든年金制度는單一企業年金制度(single employer plan) 또는 多數企業年金制度(multiemployer plan)의 형태로 설립되며 事業主 단독 또는 勞使共同으로 부담하는 酿出金과 종업원의 退職所得에 稅制專澤이 부여되는가에 따라 適格年金制度(qualified pension plan)와 非適格年金制度(nonqualified pension plan)로 分類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企業年金制度는 종류가 다양한 것 같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確定醸出金制度(defined contribution plan)와確定給付金制度(defined benefit plan)이다.確定醸出金制度에서는事業主의 酿出金만이 확정되며 이 각출금은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給付金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積立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受領할 給付金은 可變的이며 종업원의 加入年齡, 退職年齡 그리고 投資收益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確定給付制度에서는 보통 종업원의 勤務期間과 給與水準을 근거로 하여 퇴직후 수령하게 될 給付金을 결정하므로 결국確定給付金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酿出金을 부담하는 제도이다¹³⁾.

다음의 표는確定給付金制度와確定醸出金制度를 類型別로 분류한 것이다¹⁴⁾.

企業年金 (適格年金)	確定給付金制度	미리 결정된 급부금을 제공할 각출금을 연금수리 계산에 의해 서 산출하고, 소요 기금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내국 세법에 의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現金購買制度	기업이 종업원 급여중 일정비율의 각출금 (Money Purchase Plans)을 각 종업원의 계정에 적립하는 제도, 매년 거치연금을 구입해 가는 방법과 각 출금 및 운영수익으로 퇴직시에 연금을 구입하는 방식이 있다.
	利潤分配制度	이윤의 일부를 임으로 또는 정해진 산출 (Profit Sharing Plans)방식(예를 들면 이익의 10%)으로 종업 원 계정에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서 적립하는 제도. 기업에 따라서 각출금 의 유연성이 매우 높다.

11) Richard M. Steinberg and Harold Dankner, Pensions, John Wiley & Sons, Inc., 1983, p.6.

12) 日本生命東京調査部編, 年金用語辭典, 日本經濟新聞社, 昭和53年, p. 158. 일본에서는 이를 標準形年金으로 번역한다. 산업별로 미리 制度內容이 定型化(예를 들면 근무년수에 비례해서 연금액을 결정)되어 있으며, 실제 개별기업이 채용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수정만 하면 충분하다. pattern plan의 특징은 ① 酿出制가 많고 ② 社會保障給付와의 相殺條項이 없으며 ③ 即時加入方式이다.

13) Everett T. Allen, Jr., Joseph J. Melone and Jerry S. Rosenbloom, op. cit., pp. 58~64 참조.

14) 年金研究會編, 日本とろりカの年金制度, 中央法規出版社(株), 昭和62年, p. 130.

確定醸出金制度

- 節約貯蓄制度 —— 종업원 개인의 선택으로 급료의 일정 비율을 각출하고 여기에 기업이 장려금으로 일정 각출금을 가산하여 보통 2개 이상의 투자기금이 운영된다.
- 従業員特殊制度 —— 기업이 각출금과 세환수금(신규투자의 10%)을 재원으로 하여 자사주식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제도。
- 401K 制度 —— 1978년의 내국세법(Section of 401K)에 의해 도입된 과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급료공제방식의 적립제도. 기업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종업원의 절세이점이 많다.

(資料) 「歐米3か國における 企業年金 の 制度と運営」海外實務研究會(昭和60年12月)

(2) 日本의 企業年金制度의 種類와 概要

日本の企業이 실시하고 있는 年金制度는 ① 適格退職年金制度 ② 非適格退職年金制度 ③ 厚生年金基金制度 ④ 自社年金制度의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①과 ③은 社外醸出制度이고 ④는 社内留保制度이다¹⁵⁾.

1) 適格退職年金制度

종업원 15명이상의 기업에 法人稅法에서 정한 適格要件에 일치하는 제도로서 기업이 單獨으로 또는 複數企業이 공동으로 受託會社와 保險契約을 체결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62년에 미국의 適格年金制度를 모방하여 도입되었지만 日本의인 수정을 가하여 法人稅法의 一定要件을 갖춘 退職年金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각출금부담시에 損金으로 인정하고 또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課稅하지 않는다. 종업원은 실제 퇴직해서 급여를 받는 시점에 年金이면 給與所得, 退職一時金이면 退職所得으로서 課稅를 하게 된다.

2) 非適格退職年金制度

稅法上の 適格要件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승인을 받지 못하는 企業年金制度를 의미하며 넓게는 自社年金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適格要件에 대한 規制가 없으므로 세무상의 優待措置보다도 年金制度의 융통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에서 採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事業主는 醸出金의 損金算入의 이점이 없는 公益法人 또는 學校法人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3) 厚生年金基金制度

厚生年金基金制度는 1965년 厚生年金法의 개정에 의하여 1966년부터 실시한 企業年金制度이다. 이 制度는 社會保障制度인 厚生年金保險과 企業年金制度와의 機能 및 費用負擔의 競合

15) 第一生命保険相互會社編, 企業年金實務マニュアル II, 適格退職年金, 社會保險廣報社, 昭和61年, pp. 5~21. 참조.

과重複을 배제하기 위하여 양자를 조정하는 목적의 제도로서調整年金이라고도 한다. 基金을 설립하는 경우 그 가입원은 1000명이상이며企業이 단독으로 설립하는「單獨設立」, 主力企業을 중심으로相互株式所有 등有機的連繫性을 가진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連合設立」 또는 同種企業이 공동으로 설립하는「總合設立」이 있다. 設定된 基金으로 厚生年金保險의 老齡年金 중 報酬比例部分의 紙付를 代行하는 제도로서 年金給付의 財源은 사업주 및 加入자가 부담하는 紙付 및 國庫負擔金으로 조달된다. 紙付方式은豫定利子率, 死亡率, 脫退率, 昇給率을 기초로 事前積立方式에 의해 산출된다.¹⁶⁾

(4) 自社年金

自社年金은 年金制度의 管理, 運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企業自體가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며 社內年金制度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積立金 혹은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기업내에 留保하고 紙付支給時까지 企業運營資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종업원의 受給權이 確保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전에는 稅制上 優待措置가 있었기 때문에 内部留保에 의한 退職給與充當金制度를 이용하고 企業年金을 실시하였지만 邁格退職金制度와 厚生年金制度가 생기면서 이를 제도로 전환하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¹⁷⁾

III. 年金會計基準의 發展

企業年金制度는 年金契約에 의해서 종업원의 퇴직후 生存期間에 年金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은 年金費用을 종업원의 勤務期間에 미리 계상한다. 즉 종업원에게 실제 年金支給時에 年金費用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雇傭期間에 平均壽命, 離職率, 「인플레이션」率, 年金基金의 投資收益率 등을 예측하여 미래 지급할 年金給付額을 예상하고 期間年金原價를 계산한다. 年金原價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保險計理人이 保險數理上의 假定을 근거로 하고 保險數理技法을 적용하여 年金給付額을 계산한다. 따라서 年金會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¹⁸⁾ 즉, ① 未來 年金給付金으로 支給할 債務에 대한 貸借對照表上에 負債認識問題 ② 負債의 認識과 測定方法 ③ 年金費用의 決定方法 ④ 年金原價의 期間配分方法 등이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이들 문제들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基準의 主要變遷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36(ARB No.36)

年金會計基準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年金會計를 現金主義로 처리하였으므로 年金費用은 年金基金에 부담한 現金釀出金과 동일하였다. 최초의 年金會計基準은 1948년 11월에 美國公認會計士協會 會計調查公報 第36號 (ARB No.36)「年金制度의 過去勤務에 대한 年金原價會計」¹⁹⁾가 발표되었으며 그것은 후에 ARB No.43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43)으로 개정되어 基金積立型年金制度에서 발생하는 過去勤勞原價의 會計處理方法을 규정하였다.²⁰⁾

16) 日本生命東京調査部編, 年金用語辭典, pp. 63~64.

17) 第一生命保険相互會社編, 年金用語辭典, 東洋經濟新聞社, 昭和56年, pp. 51~52.

18) Earnest and Whinney,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Financial Reporting Developments, May 1981, p. 1.

19) Felix Pomeranz and Others, Pensions, John Wiley & Sons, 1976, p. 84.

20) The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ARB No. 43, "Pension Plans, Annuity Costs Based on Past Services," AICPA, June 1953.

ARB No.36의 목적은 財務諸表에 年金制度의 개시이후에 발생하는 累積給付金의 未期金積立額을 認識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會計處理하는데 세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한가지 방법은 累積給付額이 과거에 제공한 근무와 관련있다는 이유로 調整額을 過去期間에 邇及適用하는 것이며 다른 방법은 調整額을 當期損益에 부과하여 特別項目으로 분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RB No. 36은 累積給付金의 未期金積立額을 당기와 미래기간에 배분하는 세번째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年金給付金으로 지급할 원가는 종업원의 殘餘勤務期間에 인식해야 하고, 누적급부금의 미기금적립액은 연금제도의 개시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給付金에 충당할 事業主의 原價는 종업원의 근무로 발생하는 未來收益에 對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對應概念은 ARB No. 36이 나온 이후 모든 年金會計基準의 基本原則이 되었으며 現金主義會計에 变경을 가져왔다.

2 .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47 (ARB No.47)

年金負債의 概念은 1956년에 발표한 ARB No.47 「年金制度의 原價會計」²¹⁾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基準은 受給權保障給付金의 未基金積立額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未基金積立額의 增加額을 당해기간의 最小費用으로 損益計算書에 보고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會計基準의 變更에도 불구하고 ARB No.47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現金主義會計가 계속 사용되었다. 이것은 기준적용 시점에서 年金基金이 受給權保障給付金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年金制度가 ARB No.47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基金을 상당히 過小積立시켜야만 하였다.²²⁾

3 . Accounting Principles Board No.8 (APB No.8)

1965년 5월 APB는 年金制度의 重要性이 점점 커지고 여러가지 회계처리상 문제 때문에 會計調查研究 第8號 (Accounting Research Studying No. 8) 「年金制度의 原價會計」를 발표하였으며²³⁾ 1966년 11월에는 會計原則審議會意見書 第8號(APB Opinion No. 8) 「年金制度의 原價會計」가 발표되었다²⁴⁾. 이 意見書는 年金原價가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年金會計의 概念과 方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制定된 것이다. APB No.8의 목적은 ① 年金原價의 決定 ② 年金原價의 基金積立 ③ 未支給年金費用과 先給年金費用의 認識 ④ 保險數理評價方法의 적용 ⑤ 過去勤勞原價의 債却 ⑥ 保險數理利得과 損失의 債却 ⑦ 年金情報의 公示 등에 관한 基準을 정한 것이다.

(1) 年金原價의 認識

연금원가의 인식을 APB Opinion No.8이전에는 現金主義를 근거로 하였으나 이 기준에서는 發生主義原則에 의해 인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年金原價는 ① 年金制度採用 이후의

21) The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ARB No. 47,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AICPA, September 1956.

22) Harry I. Wok, Jere R. Francis and Michael G. Tearney, Accounting Theory, Kent Publishing Company, 1984, p. 487.

23) Earnest L. Hicks, "Accon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8, New York, AICPA, May 1965.

24) 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B Opinion No. 8,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AICPA, November 1966.

종업원근무에 대해 발생한 正常原價(normal cost) ② 制度採用 이전의 근무에 대한 원가(past services cost)와 制度採用 이후의 年金制度의 變更으로 인한 原價의 变동액(prior service cost)인 과거근무원가의 償却額 ③ 年金費用과 基金積立額과의 차액에 대한 利子等價額이다²⁵⁾. 또한 年金原價는 不確實한 狀態에서 측정되는 것이므로 基金投資收益率, 管理費用, 未支給與水準, 生計費, 退職年齡, 離職率, 受給權保障期間, 社會保障給付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 年金原價의 基金積立

年金原價를 測定하는데 여러가지 평가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마다 산출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基金積立額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매년 基金積立額의 最少·最大範圍를 규정하였다²⁶⁾.

最少限度額은 ① 正常原價 ② 過去勤務原價의 未基金積立額에 대한 利子等價額 ③ 受給權保障給付金의 追加積立額을 합계한 금액이며 最大限度額은 ① 正常原價 ② 過去勤務原價의 10%(완전상각시까지) ③ 年金制度의 변경으로 인한 過去勤務原價 变동액의 10%(완전상각시까지) ④ 年金費用計上額과 基金積立額과의 累積差額에 대한 利子等價額을 합계한 금액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3) 未支給年金費用과 先給年金費用의 認識

측정된 年金原價는 미래 종업원이 퇴직하였을 때 給付金支給에 충당하기 위하여 基金積立을 시켜야 한다. 基準에 의하면 산출한 年金費用은 損益計算書의 차변에 계상되고 貸借對照表대변에는 年金負債로 계상된다. 基金積立額이 年金費用보다 적은 경우라면 貸借對照表上의 대변에 未支給年金費用으로 계상되며 法的負債의 성격을 갖는다. 반대로 기금적립액이 연금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先給年金費用으로 계상된다²⁷⁾. 이것은 발생주의원칙에 의한 收益一費用對應原則과 費用測定에 대한 일반원칙과 일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4) 保險數理評價方法의 적용

年金原價를 계산하기 위한 保險數理方式에는 發生給付金評價方式(accrued benefit cost method)과豫想給付金評價方式(projected benefit cost methods) 중 한가지 방법을 일관성있게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⁸⁾. 이것은 年金基金額을 계산하는 방법들이므로 어떠한 방법이 收益一費用對應原則에 더 적합한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들 방법의 理論的根據가 없기 때문이다.

두가지 방법을 비교하면 發生給付金評價方式은 현재의 紙與를 근거로 하여 當該期間의 근무로 인한 현재 종업원의 紙付金增加額을 現價로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紙與水準이 매년 인상된다고 볼 때 酿出金은 매년 증가한다. 이에 대해豫想給付金方式은 종업원의 未支給與水準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現價이므로 酿出金負擔額은 비교적 매년 일정하다는 장점은 있다. 두 방법을 다시 분류하면 發生給付金方式에는 單位積立方式(Unit Credit Method)이 있고,豫想給付金評價方式에는 ① 正常加入年齡方式(Entry Age Normal Method) ② 到達年齡

25)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John Wiley & Sons, 1983, pp. 937~942 참조.

26) 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 cit., par. 17.

27) Accounting Principles Board, Ibid., par. 18

28) Accounting Principles Board, loc. cit., par. 20

方式(Attained Age Normal Method) ③ 總額評價方式(Aggregated Cost Method) ④ 個人評準保險科賦課方式(Individual Level Premium Method) 등이 있다²⁹⁾.

(5) 過去勤務原價의 債却

過去勤務原價(年金制度의 변경으로 인한 과거근무원가 포함)는 종업원의 未来勤務期間에 걸쳐 債却하고 基金積立額은 聯邦法人稅法과 關係法規의 영향을 받아 매년 과거근무원가의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6) 保險數理利得과 損失의 債却

保險數理假定은 미래 예상되는 사건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 推定年金原價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즉, 保險數理假定과 實際經驗과의 차이, 年金基金의 投資收益, 利子率 또는 諸假定의 변경으로 인하여 保險數理利得 또는 損失이 발생한다³¹⁾. 基準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損益認識方法으로 卽時認識法, 分散法, 또는 平均法을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當該年度와 未來期間에 인식하는 分散法과 平均法을 규정하고 있다³²⁾.

(7) 年金情報의 公示

APB Opinion No. 8은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情報를 財務諸表와 註釋으로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³⁾. 즉, ① 年金制度의 概要 ② 會計와 基金積立方針 ③ 年金原價의 積立額 ④ 年金基金과 貸借對照表上의 年金未支給額의 合計에서 先給年金費用 또는 移延年金費用을 차감한 受給權保障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 ⑤ 會計方法의 변경 (保險數理評價方式, 過去勤務原價의 債却方法, 保險數理損益의 債却方法 등), 또는 年金制度의 변경으로 인하여 會計期間別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건들의 성격과 효과등의 사항을 公示하도록 하였다.

4 .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No. 35(SFAS No. 35)

1980년에 발표된 財務會計基準報告書 第35號는 確定給付金年金制度를 채용한 기업의 會計 및 報告基準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APB Opinion No.8을 보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年金財務諸表의 주요 목적은 현재와 미래의 紙付金支給能力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財務諸表는 ① 기말현재 紙付金支給可能純資產額 ② 기중 純資產額의 變動 ③ 기초 또는 기말현재의 保險數理現價 그리고 ④ 累積給付의 保險數理現價의 매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들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³⁴⁾

(2) 紙付金으로 이용가능한 純資產에 관한 정보는 發生主義原則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³⁵⁾

29) Accounting Principles Board, Appendix A.

30) Accounting Principles Board, loc. cit., par. 22 참조.

31) Accounting Principles Board, loc. cit., par. 25.

32) Accounting Principles Board, loc. cit., par. 26.

33) Accounting Principles Board, loc. cit., par. 46.

34)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ccounting and Reporting by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35(Stamford, Conn : FASB, 1980) par. 5-6.

35) FASB, Ibid., par. 9.

(3) 年金投資資產은 보고일 현재의 公正價值로 표시하되 實際市場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市場價格으로, 市場價格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유사한 자산의 販賣價格으로 推定하도록 하였다.³⁶⁾

(4) 累積給付金으로 이용 가능한 純資產의 변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최소한 ① 公正價值에 의한 投資資產의 純評價額 ② 投資所得 ③ 사업주가 부담할 酿出金(現金이 아닌 경우 公正價值로 보고) ④ 從業員의 酿出金 ⑤ 政府補助金 ⑥ 退職從業員에게 支給한 紙付金 ⑦ 管理費用 등의 내용을 충분히 公示할 것을 규정하였다.³⁷⁾

(5) 累積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總額은 受給權保障給付金과 受給權保障이 없는 紙付金을 구분해서 보고하고 保險數理假定의 변경은 會計推定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한 영향은 변경연도와 미래연도에 처리하도록 하였다.³⁸⁾ 이것은 年金制度를 기업과 독립적인 새로운 實體로 보고 연금제도의 회계 및 보고기준을 재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5 .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No.36 (SFAS No. 36)

1980년에 발표된 財務會計基準報告書 第36號는 APB Opinion No.8과 SFAS No.35의 年金情報에 관한公示內容을 보완한 것이며 年金原價 및 年金負債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회계원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추가 공시사항을 제정한 것이다. 이 기준에서는³⁹⁾ ① 受給權保障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 ② 受給權保障이 없는 累積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 ③ 紙付金으로 이용 가능한 純資產 ④ 保險數理現價計算에 적용한豫想利子率 ⑤ 紙付金에 관한 정보가 확정된 시점에서 累積給付金을 受給權保障給付金과 受給權保障이 없는 紙付金으로 구분하여公示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위 ⑤ 의 累積給付金을 受給權이 보장안된 紙付金으로 분리해서公示해야 한다는 점이다.

6 .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No.87 (SFAS No.87)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年金會計는 APB Opinion No.8 「年金制度의 原價會計」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1974년에 從業員退職所得保障法(ERISA)이 제정된 이후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편 企業年金制度의 확대로加入從業員數가 증가함에 따라 退職給付金이 기업의 財務狀態 및 經營成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財務會計基準委員會(FASB)는 오랜기간에 걸쳐 年金會計基準을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왔으며 歐美諸國의 年金會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종래의 APB Opinion No.8은 年金비용을 發生主義原則과 收益—費用對應原則에 따라 認

36) FASB, Ibid., par. 11.

37) FASB, Ibid., par. 15.

38) FASB, Ibid., par. 24.

39)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Disclosure of Pension Information,"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36(Stamford, Conn: FASB, 1980), par. 8.

識·測定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지만 年金負債(豫想給付金債務)는 단지 연금비용을 측정한 과정의 부산물로만 인식하고 이를 貸借對照表上에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SFAS No. 87은 年金費用을 측정하는데 있어 發生主義原則과 收益－費用對應原則에 따르는 것은 동일하지만 중요한 것은 年金負債를 대차대조표상의 一般負債와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한 점이 다르다. FASB는 새로운 年金會計基準을 10년간에 걸쳐 연구·검토한 끝에 1985년 12월에 SFAS No. 87「事業主 年金會計」라는 최종기준을 발표하였다.⁴⁰⁾ 이 기준은 종업원에게 給付金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事業主의 財務會計 및 報告基準을 제정한 것으로 중요한 會計原則은 다음과 같다.

(1) 保險數理基金積立方式(actuarial funding method)

APB Opinion No. 8에서는 다섯가지 保險數理評價方式 중 임의로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SFAS No. 87에는 保險數理基金積立方式(保險數理評價方式)으로 原價方式(cost approach)과 給付金方式(benefit approach)의 두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이중 鉅부금방식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⁴¹⁾. 이는 原價方式이 종업원의 퇴직시점에서의 總豫想給付金을 산출하고 이금액을 均等額 또는 給與의 일정비율을 期間配分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年金原價의 발생과 年金負債의 산출에合理的根據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어 SFAS No. 87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給付金方式은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年金給付金을 결정하고 給付金方式을 사용하여 매년 계산한 保險數理現價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해기간의 年金原價와 年金負債를 측정하는데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 방법에는 累積給付金方式(accumulated benefit approach)과 給付金／勤務年數方式(benefit／years-of-service approach)이 있으며 기준에는 후자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2) 年金原價

年金原價는 發生主義原則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原價와 費用의 測定 및 期間認識方法과 마찬가지의 發生·移延 및 推定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年金原價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⁴²⁾. 즉, ① 年金制度가 채용된 이후의 당해기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에 대해 발생한 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 즉, 勤務原價(service cost 또는 normal cost) ② 年金給付金債務의 未基金積立額에 대한 利子費用 ③ 年金基金의 投資資產의 實際수익(또는 기대수익) ④ 年金制度가 처음 채용되거나 또는 그이후에 年金制度가 변경된 경우 그이전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에 대해 受給權이 보장된 過去勤務原價(prior service cost)를 종업원의 未未豫想勤務年數로 均等償却한 金額 ⑤ 年金制度 또는 保險數理假定의 변경으로 인하여 年金原價 및 年金負債의 保險數理現價의豫想值와 實際值와의 차이인 利得과 損失(APB Opinion No. 8에서는 保險數理利得과 損失이라 하고 10년 내지 20년간에 걸쳐 傷却하도록 하였다)을 종업원의 未未豫想勤務年數로 傷却한 금액(利得은 純期間勤務原價에서 차감하고 損失은 가산한다.) 등이 포함된다.

(3) 負債와 資產의 認識

40)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John Wiley & Sons, 1986, p. 911.

41)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No. 87 (Stamford, Conn.: FASB, 1985), par. 129.

42) FASB, Ibid., par. 20.

SFAS No. 87은 累積給付金債務가 年金制度資產의 公正價值를 초과하는 경우 累積給付金債務의 未基金積立額을 즉시 追加負債(最少負債라 한다)로 인식할 것을 규정하고⁴³⁾이 最少負債(minimum liability)를 인식할 차별계정은 無形資產(intangible assets)인 이연계정에 계상하고 만일 무형자산이 過去勤務原價의 未認識額(未償却殘額)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資本의 差減計定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이경우 過去勤務原價未認識額을 초과할 정도의 無形資產이라면 이미 保險數理損失을 경험한 것이며 이 손실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資產計定보다는 資本의 差感計定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APB Opinion No. 8의 資產·負債認識方法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4) 財務諸表上의 公示

① 財務諸表 本文의 公示

SFAS No. 87에서 정한 年金會計의 관련계정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에 의하여 재무제표상에 認識·測定·分類하여 본문에 해당계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註釋에 의한 公示

財務諸表의 본문에 공시되지는 않았지만 年金制度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註釋으로 公示하도록 基準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年金制度의 概要에는 ① 關聯從業員集團 ② 紿付金評價方法 ③ 年金制度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 둘째, 당해기간의 年金費用의 構成要素 세째, 年金制度의 基金積立額과 사업주의 貸借對照表에 보고된 금액과의 調整明細 등이다.

이상으로 미국의 企業年金會計原則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AICPA와 FASB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현재의 SFAS No. 87을 제정하였다. 이 基準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會計方法에 대해 비교적 일관성 있는 會計基準을 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새로운 基準을 既存年金制度에 적용시킬 경우 現行의 會計處理 및 公示內容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企業會計의 一般原則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성있는 基準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장에서는 새로운 會計基準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會計處理方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V. 年金會計의 主要會計處理

기업의 미래 전망에 관심이 있는 財務諸表利用者들은 연금제도가 企業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財務諸表에 보고된 정보를 이용한다. 이러한 정보가 종업원에게는 年金制度의 最終收益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며, 投資者와 債權者는 未來現金所要額을 예측하고 勞動組合에서는 年金制度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諸般法規를 준수하는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保險計理人은 基金積立에 관한 사항을 추정하며 會計士는 財務諸表上에 年金에 관한 情報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金融機關은 年金基金을 관리하기 위하여 年金會計情報가 필요하다.⁴⁴⁾

43) FASB, Ibid., par. 36.

44) David E. Mielke, "Teoretical Framework for Pension Costs,"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1, p. 11.

그러나 年金會計方法과 保險數理方法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年金負債, 期間年金費用, 年金基金積立額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이들 항목의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의 계상방법 및 年金制度의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방법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래서 年金會計의 목적은 ① 年金制度의 約定條件에 의해 종업원의 근무기간동안에 年金原價를 측정하는데 신뢰성을 제공하며 ② 期間年金原價測定의 이해 가능성, 비교가능성 및 유용성을 제공하며 ③ 退職年金과 年金財務狀態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의 범위와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하며 그리고 ④ 年金制度의 財務狀態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企業年金制度는 確定給付金制度와 確定醸出金制度의 두 종류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年金制度는 전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確定醸出金制度가 종업원이 퇴직시 수령할 급부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醸出金을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年金制度에 醸出한 基金에서 발생하는 投資損益에 의해 미래 수령하게 될 給付金의 변동이 생긴다. 따라서 사업주의 책임은 단지 年金制度가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醸出金만을 매년 부담하면 되고 그외에 加入從業員數, 醸出金算出基準, 기간별 제시된 情報의 比較可能性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건의 성격과 효과, 그리고 당해기간에 인식한 極출금(연금원가) 등을 공시하면 되므로⁴⁵⁾ 복잡한 회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確定給付金制度는 종업원이 퇴직시에 수령할 給付金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極출금을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從業員의 年齡, 勤務期間, 給與水準 등 여러가지 요인을 합수로 한 給付金算出方式에 의해 年金給付金을 결정해야 한다.⁴⁶⁾ 따라서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給付金이 미래 不確實한 변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시에 약속한 給付金을 지급할 충분한 資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基金積立方式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基金積立方式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給付金과 給付金支給時期를 결정할 未來事件과 관련있는 가정들이 정해져야 하며 또한 年金原價의 期間歸屬方法을 선택해야 한다. 이 章에서 다루게 될 企業年金制度의 主要會計上 문제는 ① 年金會計의 基本原則 ② 保險數理評價方法 ③ 純期間年金原價의 인식 ④ 年金負債와 年金資產의 인식 ⑤ 財務諸表上 公示에 관한 내용들로서 確定給付金制度의 주요 年金會計의 관련 사항들이다.

I. 年金會計의 基本原則

年金會計는 未來의 불확실한 가정하에서 미래 지급할豫想給付金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年金原價의 測定과 年金費用을 期間配分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과 마찬가지의 發生主義原則에 따라야 하며 또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推定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年金原價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에 대해 기업의 經濟的 代價를 의미하고 이것은 미래에 지급될 것이므로 未來年金給付金은 保險數理方法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年金原價의 期間配分도 미래 기간에 걸쳐 企業收益에 對應시켜야 한다. 이와같은 근거에 의해 年金會計는 特定資產의 移延認識法, 純原價法 그리고 特定資產과 年金負債의 相計處理方法의 세가지 방법을

45) FASB, SFAS No. 87, par. 65.

46) FASB, SFAS No. 87, par. 12.

主要原則으로 하고 있다.⁴⁷⁾ 즉, ① 特定資產의 移延認識方法은 年金債務의 变동과 이 債務를 상환하기 위해 積立한 資產價值의 变동은 發生시점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차기이후 기간에 體系的, 漸進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② 純原價法은 年金制度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과 거래의 인식은 사업주의 財務諸表에 單一純額으로 보고되며(이 방법은 다른 營業費用인 경우 개별적으로 보고될 수도 있겠지만 다음의 세가지 항목 즉, 約定給付金의 補償原價, 移延給付金에서 발생하는 利子費用 그리고 投資資產의 損益을 합계한 단일 금액으로 보고) ③ 資產과 負債의 相計處理方法은 年金基金의 酿出資產과 純年金原價를 保險數理現價로 계산한 年金負債의 인식액을 사업주의 財務諸表에 純額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세가지 방법에 대한 財務報告上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종업원의 年金補償原價를 가급적 殘餘勤務期間동안에 인식시키고 또한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향상시킬 목적의 純期間年金原價의 標準測定方法을 설정하고 ② 累積給付金債務가 年金資產의 公正價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負債(最少負債)를 즉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③ 財務諸表上에 보다 완전하고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公示擴大를 규정하였다⁴⁸⁾.

2. 保險數理基金積立方法(保險數理評價方法)

年金制度가 設立되거나 또는 기준제도가 변경될 경우 保險計理人은 在職中인 종업원과 退職從業員에게 지급할 紙付金의 現價⁴⁹⁾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企業 즉 事業主는 未來豫想給付金債務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年金制度에 적립할 基金을 결정한다. 한가지 방법은 債務를 즉시 基金으로 적립하는 것이지만 이경우 두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첫째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流動資產을 効率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즉시 基金積立을 하지 않을 것이며, 둘째로 미국의 內國稅入局(Internal Revenue Service)은 특정년도에 課稅目的上 控除額으로 간주할 수 있는 最大·最少의 一定金額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기업이 즉시 積立을 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매기간 基金積立額을 산출하기 위하여 保險數理基金積立方法을 적용하는데 이는 두가지 관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⁵⁰⁾. 하나는 이 방법들이 퇴직시에 충분한 基金이 적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다른 하나는 年金費用과 年金負債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이다.

保險數理基金積立方法에는 두가지 넓은 형태의 紙付金方式과 原價方式이 있으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퇴직시에만 紙付金을 基金積立하는 最終基金積立方式(terminal funding method)도 있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⁵¹⁾. SFAS No. 87에서는 紙付金方式만을 규정하고 이 방식을 다시 累積給付金方式과 紙付金／勤務年數方式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紙付金方式의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⁵²⁾.

(1) 累積給付金方式 (accumulated benefits method)

이 방법은 年金費用과 年金負債를 현재까지의 勤務年數와 현재 또는 과거의 紙與水準을 근

47) FASB, SFAS No. 87, par. 84—87.

48) FASB, SFAS No. 87, par. 88.

49) 금부금의 현가는 보험수리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이것은 현재시점과 지금대상시점간의 화폐의 시간가치와 지급화률(사망, 폐질, 해직, 퇴직과 같은 경우에 감액 지급)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이다.

50)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1986, p. 915.

51) Harry I. Wok, Jere R. Francis and Michael G. Tearney, Accounting Theory, p. 478.

52)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1986, p. 919.

거로 하여 現在給付金의 현가를 산출하는 방법이지만 계산과정에 未來給與引上額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負債를 累積給付金債務(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라 하며 未來給與水準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豫想給付金債務(projected benefit obligation)와는 다르다.

(2) 給付金／勤務年數方式((benefits／years-of-service approach)

累積給付金方式이 현재 또는 과거의 給與水準을 근거로 하여 年金費用과 年金負債를 계산하는데 대해 給付金／勤務年數方式은 퇴직시의 最終豫想給與를 적용하는 것이⁵³⁾ 중요한 차이이다. 이 방법은 總豫想給付金을 매년 均等額 또는 定率로 期間歸屬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方法에 의해 계산된 債務를豫想給付金債務라고 한다.豫想給付金債務는 퇴직시의 最終豫想給與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累積給付金債務보다 증가하지만 會計原則上이 방법이 더 合理的이라고 인정하고 勤務原價測定方法으로 給付金／勤務年數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3. 純年金期間原價의 認識(recognition of net periodic pension cost)

確定給付金年金制度에 있어서 사업주가 한 기간에 인식하게 될 主要年金原價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⁵⁴⁾

- ① 勤務原價(service cost)
- ② 利子費用(interest cost)
- ③ 年金資產의 實際收益(actual return on plan assets)
- ④ 過去勤務原價 未認識額의 債却額(amortization of unrecognized prior service cost)
- ⑤ 利得 또는 損失의 債却額(amortization of gains or losses)

(1) 勤務原價

年金制度는 미래의 不確實性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론상 履傭과 年金支給의 不確實性의 존재, 기업의 계속성, 그리고 事業主와 從業員간의 默示的 履傭契約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年金制度가 퇴직한 종업원에게 年金給付金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原價節減手段(据置賃金制度)으로 가정한다.⁵⁵⁾ 즉 사업주는 미래의豫想原價節減額을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근무)의 代價로 퇴직시에 給付金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종업원이 제공한 勤務期間에 해당하는 給付金을 퇴직후에 지급하게 되므로 매 근무기간마다 給付金을 保險數理現價로 산출하여 基金積立을 시켜야 한다. 勤務原價의 測定方法으로는 앞에서 설명한 給付金／勤務年數方式이 가장 合理的인 방법이지만 미래의 不確實性의 존재로 인하여 給付金의 現價割引率, 年金資產의 投資收益率, 종업원의 未來給與水準 그리고豫想勤務年數 등의 保險數理假定 등을 추정하여 計算方式에 적절히 반영시켜야 한다.

(2) 利子費用

勤務原價는 종업원이 퇴직시에 지급받게 되는 일종의 据置賃金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의 賃金은 퇴직시까지 이연되며 기업은 負債를 발생시킨다. 즉 종업원은 용역을 제공한 對價로 기업은 負債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부채는 미래 지급일이 되어야 정리되기 때

53) FASB, SFAS No. 87, par. 17.

54) FASB, SFAS No. 87, par. 20.

55) David E. Mielke, "Theoretical Framework for Pension Costs," p. 111.

문에 現價로 割引한 금액으로 보고되어 부채중에 基金으로 積立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未基金積立額에 대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업원의 勤務時間동안에 利子를 발생하며, 利子는豫想給付金債務의 未基金積立額에豫想利子率을 곱하여 산출하며,豫想利子率은 年金給付金을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비율이어야 하기 때문에 在内利子率 또는 投資收益率을 적용하는 수도 있다.豫想利子率은豫想給付金債務, 累積給付金債務, 受給權保障債務, 勤務原價 그리고 利子費用 등을 측정하는데 적용되는豫想割引率이기도 하다.⁵⁶⁾ 年金費用가운데 利子要素는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기업이豫想給付金을 할인하는데 높은 利子率을 적용하면豫想給付金債務는 적어지고 基金이 過少積立되는 수가 있으며 반대로 낮은 利子率을 적용시킬 경우에는 基金이 過大積立 되는 수가 있다.

(3) 年金資產의 實際投資收益

年金資產은 退職從業員의 年金請求權에 대비하여 年金基金에 적립한 基金으로 취득한 投資資產을 말하며 分散投資와 使用이 제한된 자산이다. 年金資產의 投資收益은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收益이며 적용한 收益率이 期待收益率 또는 實際收益率인가에 따라 期待收益 또는 實際收益으로 구분하고 年金資產에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年金資產의 價值評價이다. 즉 年金基金資產의 실체수익은 기초와 기말의 年金資產의 公正價格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⁷⁾, 이는 公正價格가 매매당사자간에 流通去來를 통해 資產의 對價로 받을 것이合理的으로 기대되는 금액이란 점에서 年金制度의 約定給付能力과 종업원에게 약정한 約定給付金을 지급하기 위한 미래 酿出金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情報를 제공한다는 것이다⁵⁸⁾. 한편 資產의 公正價格대신에 最低純負債(minimum net liability)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保險數理價值도 있지만 방식에 의한 경우 保險數理資產價值를 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非効率의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過去市場價值의 平均值 또는 短期市場價值의 변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長期豫想值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산의 公正價格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年金財務諸表 작성일 현재의 公正價格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동안의 公正價格를 移動平均한 市場關聯資產價值(market-related asset value)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 방법도 保險數理評價方法이므로 資產價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加重值와 期間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계산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過去勤務原價 未認識額의 償却額

APB Opinion No. 8에서는 年金制度의 正常原價를 기간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ERISA에서도 기간중에 발생한 正常原價를 當該期間에 전부 基金積立시킬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貸借對照表上에는 年金制度 실시이후의 勤務에 대한 正常原價는 負債로 計上되지 않는다⁵⁹⁾. 그러나 年金制度가 종업원이 근무한 초기부터 실시되어 왔다면 매년 正常原價만이 발생하겠지만, 후에 제도가 채택되거나 또는 制度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근무에 대한 年金原價를 측정하여 約定給付金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때의 年金給付金의 增加額을 過去勤務原價(保險數理發生負債)라고 한다.

56) FASB, SFAS No. 87, par. 44.

57) FASB, SFAS No. 87, par. 23.

58) FASB, SFAS No. 87, par. 117.

59) Sidney Davidson, Clyde P. Stickney and Roman L. Weil, Intermediate Accounting, The Dryden Press, 1982, Chapter 19-9.

過去勤務原價의 회계 처리에 대해 APB Opinion No. 8의 年金會計原則은 過去勤務原價를 年金制度가 채용 또는 변경된 시점에 즉시 基金으로 積立시키지 않으며 또한 과거근무원가의 미기금적립액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年金制度의 채용 또는 변경연도와 미래기간에 배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다. 이는 過去勤務原價를 퇴직시 지급할 年金給付金에 邇及 적용 시킬 경우 종업원의 사기양양과 生產增大效果가 미래에 나타나게 된다는 가정에서 과거 수익보다는 未來收益에 對應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에 의한 것이다.⁶⁰⁾. 또한 SFAS No. 87에서도 사업주는 미래에 經濟的效益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年金制度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변경일 현재 給付金의 수령이 예상되는 현재의 종업원의 미래근무기간(잔여근무기간)동안에 인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配分方法으로는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의 平均殘餘勤務期間동안에 直線法과 減價償却에서의 年數給計法과 유사한 방법의 상각을 인정하고 있다.⁶¹⁾ 年金制度의 채용 또는 변경시점에서 재직중인 종업원의 未來豫想勤務年數를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매년 退職 또는 移職率을 차감한 전종업원의 未來豫想勤務年數를 추정하여 상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⁶²⁾ 계산된 상각액은 당해기간의 年金原價가 되며 豫想給付金債務의 增減에 영향을 미친다.

(5) 利得 및 損失의 債却額

利得 및 損失은 保險數理基金積立方法에서 적용한 保險數理諸假定, 예를 들어 從業員給與, 死亡率, 離職率, 年金制度의 脫退率, 年金資產의 期待收益率, 利子率 등의 변경으로 인한 損益과 그리고 年金負債와 年金費用의 實제경험치와 預상경험치와의 차이로 생긴 損益의 認識과 測定에 관련된 會計問題이다. APB Opinion No. 8에서는 이를 保險數理損益이라 하였으며 SFAS No. 87에서는 간단히 利得 및 損失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손익은 규칙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예를 들면 經驗과 假定과의 근소한 차이) 또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重要な 投資損益, 保險數理假定의 변경, 工場閉鎖 등).

損益에 대한 會計處理는 이러한 利得과 損失이 經濟的 價值의 實質변화 뿐만 아니라 推定值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또는 한 기간의 利得은 다른 기간의 損失에 의해 相計되거나 반대로 한 기간의 損失은 다른 기간의 利得에 의해 相計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기간의 純年金原價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利得 및 損失이 인식·측정된 후에는 純損益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年金費用을 조정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制約條件이 따른다. 즉 금액에 관계없이 純損益이 모두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純利得 또는 純損失이 豫想給付金債務 또는 年金資產의 市場關聯價值중에서 보다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純損益(corridor approach이라 한다)은 퇴직후 급부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종업원의 平均殘餘勤務期間동안에 매년 상각하여 年金費用을 조정해야 한다.⁶³⁾ 따라서 純期間年金原價에 인식되는 純利得 또는 純損失은 年金資產의 實際收益과 期待收益과의 차이 그리고 전기에 발생한 純利得 또는 純損失의 未認識額에 대한 債却額이다.

60) Ibid., Chapter 19-10.

61) FASB, SFAS No. 87, par. 24-25.

62) FASB, SFAS No. 87, par. 29.

63) FASB, SFAS No. 87, par. 30.

4. 負債와 資產의 認識

(1) 未支給年金費用과 先給年金費用

SAFS No. 87에 의하면 負債(發生年金費用의 未基金積立額)는 純期間年金原價認識額이 사업주가 年金制度에 基金으로 酿出한 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식되며 資產(先給年金費用)은 純期間年金原價認識額이 사업주가 年金制度에 酿出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인식된다.⁶⁴⁾ 이 경우 負債는 基金이 과소적립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發生年金原價 또는 未支給年金費用이라고 하며 最終投入時點에 따라 短期 또는 長期負債로 구분되고 未基金積立額은 未支給年金費用의 대변계정에 계상한다. 이에 대해 資產은 年金費用 즉 純期間年金原價에 비해 年金制度에 基金이 過大積立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서 先給年金原價 또는 先給年金費用의 차변계정에 계상된다. 先給年金費用도 기간이 1년이내 또는 1년이상에 걸쳐 消費되는가에 따라 流動資產 또는 固定資產으로 분류된다.

(2) 最少負債와 無形資產

年金會計에 있어서 累積給付金의 未基金積立額을 財務諸表上에 負債로 계상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제기되었다. ERISA가 制定되기 이전에는 年金基金에 적립되어 있는 資產 중에 受給權保障給付金만을 年金負債로 인정하였으며 累積給付金의 未基金積立額에 대해서는 APB Opinion No. 8에서도 負債로 인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FASB의 財務會計基準에 관한 概念에서 負債는 企業이 과거의 거래 또는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에 다른 實體에게 資產을 이전하거나 用役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미래豫想되는 經濟的 給付의 희생이라고 하였으며,⁶⁵⁾ 負債가 會計上 負債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미래(請求日, 確定日 또는 特定事件의 發生日)에 資產을 이전시킬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회피할수 없으며 그리고 사건 또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⁶⁶⁾ 따라서 종업원에게 퇴직시에 累積給付金의 未基金積立額을 給付金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年金制度는 사업주와 종업원간의 交換去來라는 사실이 負債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현재의 負債로서 인식·측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SFAS No. 87에서는 累積給付金의 未基金積立額을 會計上 負債로 인정하고 累積給付金債務가 年金資產의 公正價值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累積給付金債務의 未基金積立額을 負債(未支給年金費用의 未基金積立額 포함)로 인식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累積給付金의 未基金積立額이 존재하며 ① 先給年金費用이 계상되어 있고 ② 이미 未支給年金費用의 未基金積立額으로 계상한 부채가 累積給付金債務의 未基金積立額보다 적거나 혹은 ③ 未支給年金費用이나 先給年金費用이 전혀 인식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最少負債를 계상할 것이 요구된다.⁶⁷⁾ 最少負債(minimum liability)를 인식하는 목적은 年金制度의 중요한 변경으로 保險數理損失이 발생하여 累積給付金債務가 年金資產의 公正價值를 초과하는 경우에 累積給付金債務의 未基金積立額을 부채로 계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最少負債가 負債로 계상될 경

64) FASB, SFAS No. 87, par. 35.

65) FASB,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3, December 1980, par. 28.

66) Ibid., par. 29.

67) FASB, SFAS No. 87, par. 36.

우에 會計處理는 年金資產의 公正價值보다 過去勤務原價의 未認識額이 를 경우에는 無形資產(intangible asset)으로 계상하고 最少負債가 過去勤務原價의 未認識額을 초과하면 이 초과액(純期間年金原價로 인식되지 않은 純損失 제외)에서 稅效果를 차감한 금액을 資本의 差減計定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⁶⁸⁾ 最少負債의 차변계정을 無形資產(移延年金費用計定)으로 계상하는 것은 이 原價가 현재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인식된다는 근거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無形資產이 過去勤務原價의 未認識額을 초과하는 경우(예를 들면 年金制度의 변경으로 인한 巨額의 損失이 발생할 경우)에는 資本의 差減計定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損失未認識額을 資產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때문이다. 그리고 貸借對照表를 작성하기 위하여 追加負債를 새로 계상할 경우에 無形資產과 資本의 差減計定은 필요하면 相計시키거나 조정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두 계정이 簡接상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⁶⁹⁾

5. 年金會計情報의 公示

年金會計의 公示目的은 財務諸表利用者들에게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年金支給日에 현재 또는 미래의 給付金支給能力을 평가하는데 有用性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財務諸表만으로는 年金制度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없기때문에 追加情報を 註釋으로 公示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給付金支給能力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로는 ① 期末現在 給付金支給可能純資產 ② 期中純資產變動額 ③ 期初 또는 期末現在의 累積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 ④ 累積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의 变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효과등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純資產과 給付金을 결정하는데는 推定과 判斷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가정과 방법을 공시할 경우 이용자들은 이들 정보에 의해 평가가 용이해진다. 年金會計의 公示問題는 APB Opinion No. 8에서 규정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变경 또는 보완되어 왔으며 주요내용들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APB Opinion No. 8은 年金에 관한 財務諸表上의 주요 공시사항으로 ① 年金制度의概要 ② 年金會計와 基金積立方針 ③ 當該年度의 年金費用 ④ 受給權保障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 ⑤ 年金會計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건들의 性格과 効果등을 公示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會計情報利用者들의 意思決定과 判斷에 필요한 공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美國公認會計士協會에서는 1972년에 APB Opinion No. 22「會計方針의 公示」를 발표하여 기업의 財務狀態, 財務狀態의 变동과 經營成果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會計原則, 收益認識 그리고 原價의 期間配分등의 중요한 會計方針을 財務諸表에 대한 註釋으로 公示할 것을 규정⁷⁰⁾하면서 年金會計의 공시요건도 한층 확대되었다.

(2) SFAS No. 35는 APB Opinion No. 8의 공시요건을 보충하는 기준으로서 確定給付金制度의 會計와 報告基準을 제정한 것이며 주요 공시사항으로는 ① 累積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保險數理方法, 主要假定 및 变경사항 ② 投資資產의 公正價值決定에 적용한 方法과 주요가정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외에 추가공시 사항으로는 ①

68) FASB, SFAS No. 87, par. 37.

69) FASB, SFAS No. 87, par. 38.

70) Accounting Principles Board,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APB Opinion No. 22, AICPA, April 1972, par. 12.

受給權保障과 紙付金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年金制度의 概要 ② 年金制度의 주요변경사항과 이들이 미치는 영향 ③ 年金制度 解止時의 加入者の 優先請求順位와 紙付金保証에 관한 내용 ④ 年金制度의 所得稅 ⑤ 紙付金으로 지급할 純資產의 5%를 초과하는 投資資產에 대한 감정 ⑥ 사업주의 基金積立方針과 酒出金算出方式 ⑦ 年金制度의 후원자, 사업주 또는 종업원집단과 공동 취득한 주요부동산 또는 거래내용 ⑧ 年金制度의 현재와 미래의 紙付金支給能力을 평가하는데 있어 財務諸表의 유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우발사건 및 거래내용등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3) SFAS No. 36은 APB Opinion No. 8과 SFAS No. 35을 수정 또는 보완한 기준으로서 年金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計算에 적용한豫想收益率의 公示와 受給權保障給付金의 未基金積立額⁷¹⁾에 대한 추가공시를 규제하였으며 또한 이기준은 사업주의 財務諸表에 표시한 年金制度의 財務狀態에 관한 情報의 비교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⁷²⁾ SFAS No. 36은 위에서 언급한 공시사항들 외에 ① 受給權保障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 ② 紙付金으로 지급가능한 純資產 ③ 受給權未保障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 ④ 受給權保障給付金과 受給權未保障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計算에 적용한豫想收益率 그리고 ⑤ 紙付金에 관한 情報日 등의 공시를 규정하였다. 특히 現價計算에 적용한豫想收益率은 諸假定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종업원의 紙付金이 발생한 시점과 受領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累積給付金의 現價는 적용한 利子率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된다. 일정한 조건이라면豫想收益率이 낮을수록 累積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는 커지므로豫想收益率을決定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자율을 추정하는데는 현재 保有投資資產의 期待收益率, 市場收益率 또는 투자자산의 實際再投資收益의 期待收益率등이 고려되었다.⁷³⁾

(4) 1985년에 발표된 SFAS No. 87은 지금까지 설명한 年金會計公示에 관한 諸基準을 전반적으로 수정내지는 보완한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이라 할 수 있다. 이기준은 財務諸表利用者들이 사업주의 年金制度의 現況과 財務狀態 및 經營成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제시한 내용보다 훨씬 포괄적인 情報의 公示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⁷⁴⁾ ① 加入從業員集團, 紙付金方式의 유형, 基金積立方式, 중요한 債務損失, 保有資產의 종류등에 관한 年金制度의 概要 그리고 기간별 정보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건들의 성격 및 효과 ② 당해기간의 純期間年金原價(年金費用)의 諸要素 그리고 ③ 年金制度의 基金積立現況과 사업주의 貸借對照表上 報告金額의 調整明細書에 포함되는 개별항목은 ④ 年金資產의 公正價值 ⑤ 累積給付金債務 및 受給權保障給付金債務에 해당하는豫想給付金債務額 ⑥ 過去勤務原價의 未認識額 ⑦ 純損益의 未認識額(市場關聯價值를 반영하지 않

71) Lane Alan Daley, "The Valuation of Reported Pension Measures for Firms Sponsoring Defined Benefit Plan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84, p. 179. 참조.

(수급권 보장급부금은 계속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개별 종업원에게 계약상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계산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미래예상지급액의 현가로 측정된다. 수급권보장급부금의 미기금적립액 이란 연금기금의 자산가치가 수급권보장급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72) Hortense Goodman and Others, Illustration and Analysis of Disclosure of Pension Information, AICPA, 1981, p. 1

73) Ibid., p. 10.

74) FASB, SFAS No. 87, par. 54.

은 資產利得 및 損失포함) ⑤ 年金制度의 变경일현재 존재하는 純資產의 殘額과 純負債의 未認識額 ⑥ 追加負債認識額 ⑦ 貸借對照表上에 年金資產 또는 年金負債認識額(先給年金費用 또는 未支給年金費用) ⑧ 豫想給付金債務를 측정하는데 적용한 豫想加重平均割引率과 豫想給與上率 그리고 年金資產의 長期加重平均期待收益率 ⑨ 사업주가 保証한 金額과 保証內容 그리고 年金資產에 편입되어 있는 關聯集團, 資產의 償却方法, 또는 未未契約條件의 变경내용과 그 성격 등이 있다. 이와같이 SFAS No. 87은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공시내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年金制度의 概要와 紿付金方式은 이용자들이 財務諸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純期間年金原價는 紿付金方式에 의해 측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財務諸表에 계상된 純年金負債(또는 資產) 및 純期間年金原價計算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의 성격과 효과를 公示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年金制度가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한 특정사건을 공시해야 한다. 더욱이 基金積立方式과 保有資產의 종류를 공시하면 현금흐름 및 현금흐름과 年金費用과의 差異發生原因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勤務原價要素를 공시하면 純期間年金原價의 性格, 年金原價의 变동원인 그리고 財務狀態와 종업원의 급여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째, 負債와 資產에 관한 정보의 공시는 企業年金制度의 經濟性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受給權保障給付金의 공시는 確定負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용자들에게 年金資產의 내용과 당해기간의 基金資產의 實際收益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는 年金資產을 營業資產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경영자의 管理責任과 投資政策의 實現可能性 그리고豫想危險水準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사업주의 貸借對照表上의 關聯金額을豫想給付金債務의 基金積立額과 조정하는 것은 會計處理金額과 基金積立額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네째, 諸假定에 관한 정보는 實際年金給付金計算과 會計情報의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가정을 공시하는 것이다. 割引率과 관련된 가정은豫想加重平均割引率과 未未給與上率에 관한 것으로서 이 두가지 가정은 純期間年金原價의 合計額과豫想給付金債務 그리고 이 두가지 가정이 관련되어 있는 금액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

V. 우리나라 企業의 退職年金會計

현재 우리나라의 年金制度는 公務員年金(1960년 시행), 軍人年金(1963년 시행), 私立學校教職員年金(1973년 시행) 등 特殊職種을 대상으로 하는 公的年金이 운영되고 있으며, 1988년 1월부터는 事業場勤勞者를 대상으로 하는 國民年金制度가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賃金後拂의 성격이 강한 退職一時金制度가 勤勞者의 老後生計保障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行退職一時金制度는 기업의 年輪이 길어지고 동시에 근로자의 中高齡化 현상이 생기면서 退職金負擔이 가중되고 있으며 企業倒產時 複직금지급을 위한 保障制度가

마흡하기 때문에 가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개선으로 平均壽命의 연장을 가져와 老齡人口의 급속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종 社會的危險은 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기업뿐 아니라 社會保障側面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全國民을 대상으로 하는 國民年金法을 제정하고 시행초기에는 소득이 있는 事業場의 勤勞者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 退職金制度를 年金化하여 단계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企業年金制度와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외국의 企業年金制度는 公的年金의 機能限界와 年金財政에 의한 紿與水準의 한계때문에 점차 분리되어 그 補完機能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또는 순수한 企業年金制度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國民年金制度도 全國民을 대상으로 하는 社會保障制度로서 정착이 되면 公的年金과 企業年金을 분리하여 相互補完機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現行國民年金制度는 國民年金法에 의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의 위탁을 받아 國民年金管理公團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매년 公團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家豫算에서 부담한다.⁷⁵⁾ 그러나 기존 公的年金制度에 대해서 公務員과 軍人年金은 報酬月額의 5.5%, 教員年金은 2.0%를 국가가 부담하는데 대해 國民年金은 국가의 補助金이 없다. 다음은 國民年金制度의 企業과 직접 관련있는 주요 내용과 年金會計의 관련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1. 國民年金制度의 適用對象

國民年金의 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國民으로서 常時5인 이상(실시초기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주(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자가 되며 기존 公的年金에 2종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⁷⁶⁾

2. 年金費用負擔

年金管理工團의 관리·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年金支給에 충당하기 위한基金은 가입자 및 사업주가 매월 酿出料를 부담해야 하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報酬月額의 일정율과 退職金轉換金으로 구분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⁷⁷⁾ 그 내용을 보면 ① 酿出料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寄與金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負擔金을 각각 標準報酬月額⁷⁸⁾의 1.5%를 징수하고 1993년부터 ★★표

1997년까지는 각각 2.0% 그리고 1998년 이후는 각각 3.0%로 증액이 된다. ② 退職金轉換金⁷⁹⁾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標準報酬月額의 2.0%

75) 國民年金法, 第74條.

76) 國民年金法, 第6條 내지 第8條.

77) 國民年金法, 第75條 및 附則 第4條.

78) 표준보수월액이라 함은 각출료 및 연금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보수월액(노무의 댓가로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수당 또는 기타 노무의 댓가로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수당 또는 기타 노무의 댓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79) 퇴직금전환금이라 함은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연금기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의미하며 사업장 가입자에게 미래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금 중에서 퇴직금 전환금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1988년 이후부터는 3.0%를 酒出料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國民年金制度가 실시되더라도 退職金制度는 현행대로 존속되며 1993년 이후에 가서 일정율을 國民年金基金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現行退職金을 전부 年金化시키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退職金이 전액 적립되기 전에 퇴직하면 年金基金의 轉換金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구분	년도	'88~'92	'93~'97	'98 이후
근로자		1.5%	2.0%	3.0%
사용자		1.5	2.0	3.0
퇴직금		-	2.0	3.0
전화금				
계		3.0%	6.0%	9.0%

3. 年金給與의 支給

年金給與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生計保章手段으로 지급되며 급여의 종류로는 老齡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 및 返還一時金의 4종류가 있다. 이중 老齡年金은 가입기간이 20년이상 가입자가 60세가 된 후부터 生存時까지 지급받으며 15년이상 20년미만 가입자는 減額老齡年金 그리고 가입기간이 단기인 가입자에게는 退職一時金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年金支給開始後에 經濟事情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標準報酬月額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⁸⁰⁾ 이는 年金給與額을 납부한 酒出料와 관계없이 年金支給事由가 발생한 시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여의 實質價值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4. 年金基金의 財源

年金管理公團은 國民年金基金을 설치하고 給與支給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으로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酒出料, 基金運用收益, 積立金 및 公團의 收入支出決算上 剩余金으로 조성하며 年金基金은 事前積立方式(funding method)을 채택하고 있다.

5. 退職年金會計

현재 年金制度가 처음 실시단계에 있기 때문에 年金會計에 관한 處理基準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참고로 現行退職金制度의 會計處理를 보면 企業會計基準에서는 退職給與充當金을 당기의 收益과 對應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의 收益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推算하여 계상하도록 하고,⁸¹⁾ 기말현재 任職員의 退職金所要額과 退職給與充當金의 設定殘額 및 기종의 退職金支給額과 任員退職金의 處理方法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⁸²⁾ 退職給與充當金設定에 관한 일관성

80) 國民年金法, 第47條 5項。

81) 證券管理委員會, 企業會計基準, 第47條, 1985. 12. 27改正。

82) 企業會計基準 第52條。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企業會計基準에서는 貸借對照表日 現在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退職給與充當金 全額을 계상하도록 하였으나⁸³⁾ 稅法上 損金 算入限度를 초과하는 금액은 法人稅 惠澤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설정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企業會計基準에 의한 退職給與充當金의 追加設定은 사실상 유보된 상태에서⁸⁴⁾ 年金制度가 실시되고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年金基金에 轉換되므로 退職給與充當金의 처리문제는 企業會計基準과 稅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年金制度는 다른 외국의 연금제도에 비해 회일적이며 酿出料의 賦課比率과 制度自體가 일률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會計上 복잡한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年金制度가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財務諸表利用者들에게는 意思決定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年金會計 및 財務諸表上의 公示問題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主要會計上 問題

① 退職給與充當金은 年金制度의 채용시점에서 종업원의 過去勤務原價에 해당되며 퇴직시 지급해야 할 確定負債인 동시에 年金基金으로 전환해야 할 금액이므로 기업의 負擔을 最少化시키는 방향에서 처리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負擔率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報酬月額의 4.0%, 1998년 이후부터는 6.0%로 부담이 증가되므로 企業會計基準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退職金不足額을 期間配分하고 損費認定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기업이 추가로 계상하는 경우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既設定된 退職給與充當金의 轉換終了期間을 고려하여 부족액을 장기간에 걸쳐 期間配分하는 方法 ② 酿出料의 徵收 및 納入에 따른 會計處理(근로자와 사업주 구분계상) ③ 酿出料 徵收額과 納入額과의 차이로 인하여 過誤納入되었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한 會計處理 ④ 酿出料를 납입하고 가입자가 資格을 상실한 경우 期間未經過分에 해당하는 先納額을 환수받았을 때의 會計處理 ⑤ 酿出料를 소정기일까지 미납했을 경우에 延滯金의 會計處理 ⑥ 退職으로 인하여返還一時金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다시 加入資格을 취득한 때 지급받은返還一時金을 全額 또는 分割하여 반납할 경우의 會計處理(이자포함) 그리고 ⑧ 退職金을 年金基金으로 轉換할 경우의 會計處理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2) 財務諸表上의 公示

財務諸表作成日 현재의 退職年金制度에 관한 主要公示事項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年金制度의 概要 ② 財務諸表作成日 현재의 基金積立額 ③ 가입자 전원의 平均報酬月額과 算出根據 ④ 年金制度開始直前日 현재의 가입자 전원의 退職一時金 합계액(기설정액과 미설정액 구분표시)과 未設定額의 추가계상방법 ⑤ 財務諸表作成日 현재의 退職給與充當金未設定額의 당해년도 추가설정액 ⑥ 당해년도의 退職金轉換金額과 退職給與充當金殘額 ⑦ 退職金

83) 企業會計基準 附則 2項, “退職給與充當金에 관한 經過措置”, 1984. 9. 1. 施行,

84) 企業會計基準附則 3項, “退職給與充當金에 대한 經過措置,” 1985. 12. 27. 시행.

轉換比率 또는 轉換期間 ⑧ 年金基金의 財務狀態表 ⑨ 年金會計方法 또는 年金制度의 주요변경으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과 효과 그리고 財務諸表利用者들의 意思決定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한다.

6. 結論

본 논문은 미국의 企業年金制度를 중심으로 사업주 즉 기업의 입장에서 期間年金原價의 認識, 年金負債와 年金資產의 認識과 이들 관련사항에 대한 會計處理 그리고 財務諸表上의 公示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企業年金會計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에 접근하여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PB Opinion No. 8에서는 年金費用과 負債를 認識, 測定하는데 있어 다섯가지의 保險數理評價方法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각 방법에 따라 測定金額이 다르며 또한 年金負債를 회계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당해년도의 年金費用과 基金積立額과의 차이만을 계상할 뿐 미래에 企業이 給付金으로 지급해야 할 累積給付金의 未基金積立額을 負債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있는 主要負債가 財務諸表上에 계상되지 않아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財務諸表가 왜곡 표시 되고 기간별 또는 기업간에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SFAS No. 87은 年金原價 및 年金負債가 기업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기준은 發生主義原則에 따라 關聯會計原則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會計처리 方法을合理的이고 一貫性있게 적용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基準의 特징은 ① 過去勤務原價에 관한 年金負債를 직접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過去勤務原價의 未基金積立額을 會計上 負債로 인식하여 그것을 純年金負債(年金債務와 年金基金資產의 差額)로 인식하고 ② 年金給付金의 측정 방법으로 給付金／勤務年數方式의 單一方法을 적용하며豫想給付金債務를 계산하는데 현재의 급여가 아닌 未來給與水準을 기준으로 하고 ③ 期間年金原價의 構成要素에는 당해년도의 勤務에 해당하는 年金給付金의 保險數理現價와 利子費用, 過去勤務原價의 償却額, 年金基金資產의 實際損益(利得은 純期間年金原價에서 차감하고 損失은 가산), 年金制度의 变경 또는 諸假定의 变경으로 인한 損益의 償却額(이득은 차감, 損失은 가산) 등이 있으며, ④ 過去勤務原價와 利得 또는 損失額에 대한 償却方法은 미래 給付金의 지급이 예상되는 종업원의 未来豫想勤務期間 동안에 直線法에 의해 償却하며 ⑤ 累積給付金이 年金資產의 公正價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累積給付金의 未基金積立額을 最少負債로 인식(追加負債 또는 過去勤務原價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無形資產 혹은 資本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며 ⑥ 無形資產과 資本의 차감계정은 직접 상각하지 않고 두 계정간에 相計處理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確定給付金年金制度를 채택한 기업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年金原價가 감소될 수 있다는 잊점이 있는 반면에 年金原價의 未基金積立額을 負債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負債가 증가한다는 불리한 점도 있어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⁸⁵⁾ 현재로서는 어떠한 기준보다도 가장 논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85) Bill Liebtag, "Accounting for Pensions," Journal Accountancy, April 1986, p. 53.

한편 우리나라의 企業退職年金制度는 지금까지 退職一時金制度가 退職勤勞者의 生計手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社會保障機能을 수행하고 또한 所得保障機能을 일부 담당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그마저 50세 이전의 젊은 나이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一時金形態의 退職金으로는 퇴직후의 老後生計保障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國民年金制度는 1973年에 법이 제정된 후 시행이 보류되었다가 우리나라의 經濟社會面의 성숙된 여건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社會保障策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強制適用의 성격을 띠고 現行退職金制度와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國民年金制度의 실사와 관련해서 기업의 당면문제는 退職給與充當金未設定額의 추가 설정 및 年金會計處理에 관한 것이다. 退職給與充當金은 미래에 근로자에게 年金支給을 위한 基金으로 적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未設定額은 現行基準과 稅法의 조정을 거쳐 確定負債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또한 財務諸表는 發生主義原則과 重要性의 原則에 따라 작성되고 財務諸表利用者들에게는 企業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를 비교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끝으로 年金公團은 사업주 및 가입자가 납입한 基金積立現況과 基金運用狀態를 정기적으로 公開하여 企業의 財務諸表作成과 情報利用者들에게 有用性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參 考 文 獻

- 閔載成, 年金制度와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政策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0, 가을호.
- 閔載成·朴宰用,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84.
- 申守植, 國民福祉年金論, 生命保險協會, 1979.
- 申守植, 退職金制度의 2大課題와 團體生命保險, 保險調查月報, 1981, 2.
- 證券管理委員會, 企業會計基準, 1985, 12, 27改正.
- _____, 大法典, 法典出版社, 1988.
- 年金研究會編, 日本とろメリカの年金制度, 中央法規出版(株), 昭和 62年.
- 日本生命東京調查部編, 年金用語辭典, 日本經濟新聞社, 昭和 53年.
- 庭田範秋, 現代生命保險の課題, 東洋經濟新報社, 昭和 56年.
-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編, 企業年金實務 マニコルル II, 邁格退職年金, 社會保險廣報社, 昭和 61年.
-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編, 年金用語辭典, 東洋經濟新聞社, 昭和 56年, 1985.
- 村上清, 新企業年金入門, 社會保險廣報社, 1984.
- 村上清, 年金の知識,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85.
- Accounting Principles Board,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APB Opinion No. 8, AICPA, November 1966.
- Accounting Principles Board,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APB Opinion No. 22, AICPA, April 1972.
- Bill Liebtag, "Accounting for Pensions," Journal Accountancy, April 1986.
- David E. Mielke, "Theoretical Framework for Pension Cost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1.
-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John Wiley & Sons, 1983.
-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John Wiley & Sons, 1986.
- Earnest L. Hicks,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8,

- AICPA, May 1965.
- Earnest L. Hicks and Whinney,"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Financial Reporting Development, May 1981.
- Everet T. Allen, Jr.,Joseph J. Melone and Jerry S. Rosenbloom, Pension Planning, Richard D. Irwin, Inc., 1984.
- Felix Pomeranz, Gordon P. Ramsey and Richard M. Steinberg, Pensions, John Wiley & Sons, 1976.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ccounting Reporting by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35, FASB, 1980.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Disclosure of Pension Information,"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36, FASB, 1980.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Employers' Accounting for Pension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87, FASB, 1985.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Element of Financial Statement of Business Enterprises,"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3, December 1980.
- Harry I. Wok, Jere R. Francis and Michael G. Tearney, Accounting Theory, Kent Publishing Company, 1984.
- Hortense Goodman and Others, Illustration and Analysis of Disclosure of Pension Information, AICPA, 1981.
- Lane Alan Daley, "The Valuation of Reported Pension Measures for Firms Sponsoring Defined Benefit Plan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84.
- Richard M. Steinberg and Harold Dankner, Pensions, John Wiley & Sons, Inc.,1983.
- Sydney Davidson, Clyde P. Stickney and Roman L. Weit, Intermediate Accounting, The Dryden Press, 1982.
- The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Pension Plans : "Annuity Costs Based on Past Services,"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 AICPA, June 1953.
- The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 "Accounting for the Cost of Pension Plans,"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7, AICPA, September 1956.